

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2. 3. 7

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2. 3. 7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94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(2002. 3. 15) 상정
- 제94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(2002. 3. 15)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이상훈)

제안이유

-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법률(2001. 5. 24)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 사무의 위임사항 및 적용되는 근거법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함

주요골자

【 구 위임사항 】

- 위임사무명
 - 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사항을 조정함(안 별표)
- 당초사무명

- 당 초(9)
 - 유통관련업자의 등록, 등록사항의 변경신고, 등록종교부 및 갱신교부, 폐업, 등록취소 등 과징금 및 과태료부과·징수, 청문, 폐쇄 등 수거조치, 벌칙(고발)
- 변 경(9)
 -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의 등록, 복합유통·제공업의 신고 및 등록, 신고증·등록증의 교부,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, 폐업, 등록취소 등, 과징금 부과 및 납부, 청문, 폐쇄 및 수거 조치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없 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 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| 제569호 |
| 의결년월일 | 2002. 3. 20 (제94회) |

제출년월일 : 2002. 3. 7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제안이유

○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(2001. 5. 24)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 사무의 위임사항 및 적용되는 근거법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함

주요골자

【 구 위임사항 】

○ 위임사무명

• 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사항을 조정함(안 별표)

○ 당초사무명

- 당 초(9)
 - 유통관련업자의 등록, 등록사항의 변경신고, 등록증교부 및 갱신교부, 폐업, 등록취소 등 과징금 및 과태료부과·징수, 청문, 폐쇄 등 수거조치, 벌칙(고발)
- 변 경(9)
 -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의 등록, 복합유통·제공업의 신고 및 등록, 신고증·등록증의 교부,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, 폐업, 등록취소 등, 과징금 부과 및 납부, 청문, 폐쇄 및 수거조치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사무위임조례증개정조례안

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중 1. 부천시사무의 구 위임사항의 문화예술과 위임사무명란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| 실·과·소명 | 위임사무명 | 단 위 사 무 명 | 근거법적용 | 수임기관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----|
| 문화예술과 | 2. 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 음 권한 | 가.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의등록 등 나. 복합유통·제공업의 신고 및 등록 다. 신고증·등록증의 교부(음반 등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) 라.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(음반 등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) 마. 폐업 바. 등록취소 등(음반 등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) 사. 과징금 부과 및 납부 아. 청문(음반 등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) 자. 폐쇄 및 수거조치(음반 등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) | 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제28조 동법 제30조 동법 제31조 동법 제34조 동법 제39조 동법 제40조 동법 제41조 동법 제42조 | 구 청 장 |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1. 부천시 사무의 구위임사항

| 현 행 | | | | | 개 정 안 | | | | |
|--------|---|--|---|-------|--------|---|---|---|-------|
| 실·과·소명 | 위임사무명 | 단 위 사 무 명 | 근거법적용 | 수임기관 | 실·과·소명 | 위임사무명 | 단 위 사 무 명 | 근거법적용 | 수임기관 |
| 문화예술과 | 2. 음반및 비디오 물관리 및게임 물 에 관 한 법률 에 의한 다음의 권한 | 가. 유통관련업자의 등 록 나. 등록사항의 변경신 고 다. 등록종교부 및 경 신교부 라. 폐업 | 음반및비디 오물관리및 게임물 에 관 한 법률 제7 조 동법 제9조 동법 제11조 동법 제12조 | 구 청 장 | 문화예술과 | 2. 음반·비 디오물 및게임 물 에 관 한 법률 에 의한 다음 권 한 | 가. 비디오물시청제 공업의등록 등 나. 복합유통·제공업 의 신고 및 등록 다. 신고증·등록증의 교부(음반 등 제 작업 및 배급업 제외) 라.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변경(음 반 등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) | 음반·비디오 물 및 게임물 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제28조 동법 제30조 동법 제31조 | 구 청 장 |

| 현 행 | | | | | 개 정 안 | | | | |
|--------|-------|--|---|-------|--------|-------|---|--|-------|
| 실·과·소명 | 위임사무명 | 단 위 사 무 명 | 근거법적용 | 수임기관 | 실·과·소명 | 위임사무명 | 단 위 사 무 명 | 근거법적용 | 수임기관 |
| 문화예술과 | | <u>마. 등록취소 등</u> <u>바.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징수</u> <u>사. 청문</u> <u>아. 폐쇄 등 수거조치</u> <u>자. 벌칙(고발)</u> | <u>동법 제13조</u> <u>동법 제14조 제33조</u> <u>동법 제15조</u> <u>동법 제24조</u> <u>동법 제29조 제30조 제31조</u> | 구 청 장 | 문화예술과 | | <u>마. 폐업</u> <u>바. 등록취소 등(음반 등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)</u> <u>사. 과징금 부과 및 납부</u> <u>아. 청문(음반 등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)</u> <u>자. 폐쇄 및 수거조치(음반 등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)</u> | <u>동법 제34조</u> <u>동법 제39조</u> <u>동법 제40조</u> <u>동법 제41조</u> <u>동법 제42조</u> | 구 청 장 |